

2021) 건축산업기사 4주완성 3차 정오표[2021.8.14]

[과년도 출제문제]

페이지	항 목	오	정
216	2018년 3회 56번 정답 추가	55. ④ 57. ② 58. ②	55. ④ <u>56. ③</u> 57. ② 58. ②

2021) 건축산업기사 4주완성 2차 정오표[2021.2.22]

[Ⅲ. 건축구조]

페이지	항 목	오	정
427	07. 철근의 이음과 정착 4 - 1) - ㉔ 그림 수정		
428	07. 철근의 이음과 정착 핵심 PLUS 06번 보기 수정	① D13 주철근 : 2d _b 이상 ② D25 주철근 : 3d _b 이상 ③ D13 주철근 : 2d _b 이상 ④ D16 주철근 : 2d _b 이상	① D13 주철근 : 2d _b 이상 ② D25 주철근 : 3d _b 이상 ③ D13 띠철근 : 2d _b 이상 ④ D16 띠철근 : 2d _b 이상

[Ⅳ. 건축설비]

페이지	항 목	오	정												
552	02. 공기조화설비 핵심 PLUS 59번 해설 수정	복사난방은 구조체를 덥히게 되므로 예열시간이 길어져 일시적으로 쓰는 방에는 부적당하다. ※ 간헐난방 : 일시적으로 하는 난방으로서 간헐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온수, 증기, 온풍 등의 난방방식에 적당하다.	복사난방은 구조체를 덥히게 되므로 예열시간이 길어져 일시적으로 쓰는 방에는 부적당하다. ※ 간헐난방 : 일시적으로 하는 난방으로서 간헐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증기, 온풍 등의 난방방식에 적당하다.												
583	03. 전기설비 ㉑ - 1 - 1)항 표 수정	■ [표] 전압의 종류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20.12.3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 종류</th> <th>저 압</th> <th>고 압</th> <th>특별고압</th> </tr> </thead> <tbody> <tr> <td>직 류</td> <td>1,500V 이하</td> <td>1,500~7,000V</td> <td>7,000V 초과</td> </tr> <tr> <td>교 류</td> <td>1,000V 이하</td> <td>1,000~7,000V</td> <td>7,000V 초과</td> </tr> </tbody> </table>	구분 \ 종류	저 압	고 압	특별고압	직 류	1,500V 이하	1,500~7,000V	7,000V 초과	교 류	1,000V 이하	1,000~7,000V	7,000V 초과	
구분 \ 종류	저 압	고 압	특별고압												
직 류	1,500V 이하	1,500~7,000V	7,000V 초과												
교 류	1,000V 이하	1,000~7,000V	7,000V 초과												

[Ⅴ. 건축법규]

페이지	항 목	오	정
632	01. 총칙 4) 건축법 적용의 완화 ①항 수정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22	04. 특별건축구역, 보칙 등 2) - ① - ㉔항 수정	㉔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㉔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페이지	항 목	오	정																																																			
735	05. 주차장법 핵심 PLUS 9번 문제 수정	09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로 옳지 않은 것은?(단, 일반형으로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09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로 옳은 것은?(단, 일반형으로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757	06. 국토의 계획 핵심 PLUS 2번 답 수정	답 : ③	답 : ②																																																			
764	06. 국토의 계획 ⑤ - 1항 표 내용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용 도 지 역</th> <th>용 도 지 구</th> <th>용 도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지정수</td> <td>4(세분 지정)</td> <td>9(세분 지정)</td> <td>4</td> </tr> <tr> <td>관련법</td> <td>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td> <td>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td> <td>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td> </tr> <tr> <td>지정자</td> <td>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td> <td>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td> <td>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td> </tr> </tbody> </table>	구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용 도 구 역	지정수	4(세분 지정)	9(세분 지정)	4	관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지정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구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용 도 구 역																																																			
지정수	4(세분 지정)	9(세분 지정)	4																																																			
관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지정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																																																			
774	06. 국토의 계획 ⑧ - 2항 표 내용 수정	<p>※ 20.12.10 시행</p> <table border="1"> <thead> <tr> <th>용도지역 구분</th> <th>용적률의 최대한도</th> <th>지역의 세분</th> <th>용적률의 세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상업 지역</td> <td rowspan="2">1,500%</td> <td>중심상업지역</td> <td>200~1,500%</td> <td rowspan="4">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td> </tr> <tr> <td>일반상업지역</td> <td>200~1,300%</td> </tr> <tr> <td rowspan="2">공업 지역</td> <td rowspan="2">400%</td> <td>유통상업지역</td> <td>200~1,100%</td> </tr> <tr> <td>근린상업지역</td> <td>200~900%</td> </tr> <tr> <td rowspan="6">도시 지역</td> <td rowspan="6">500%</td> <td>준공업지역</td> <td>150~400%</td> <td rowspan="3">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td> </tr> <tr> <td rowspan="3">일반 주거 지역</td> <td>일반공업지역</td> <td>150~350%</td> </tr> <tr> <td>전용공업지역</td> <td>150~300%</td> </tr> <tr> <td>전용 주거 지역</td> <td>200~500%</td> </tr> <tr> <td rowspan="2">전용 주거 지역</td> <td>제1종</td> <td>100~200%</td> <td rowspan="2">제1종, 2종으로 구분</td> </tr> <tr> <td>제2종</td> <td>100~250%</td> </tr> <tr> <td rowspan="2">전용 주거 지역</td> <td>제1종</td> <td>100~300%</td> <td rowspan="2">제1종, 2종으로 구분</td> </tr> <tr> <td>제2종</td> <td>50~100%</td> </tr> <tr> <td rowspan="3">녹지 지역</td> <td rowspan="3">100%</td> <td>생산녹지지역</td> <td>50~100%</td> <td rowspan="3"></td> </tr> <tr> <td>자연녹지지역</td> <td>50~100%</td> </tr> <tr> <td>보전녹지지역</td> <td>50~80%</td> </tr> </tbody> </table>	용도지역 구분	용적률의 최대한도	지역의 세분	용적률의 세분	비고	상업 지역	1,500%	중심상업지역	200~1,500%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	200~1,300%	공업 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200~1,100%	근린상업지역	200~900%	도시 지역	500%	준공업지역	150~400%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	일반 주거 지역	일반공업지역	150~350%	전용공업지역	150~300%	전용 주거 지역	200~500%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100~200%	제1종, 2종으로 구분	제2종	100~250%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100~300%	제1종, 2종으로 구분	제2종	50~100%	녹지 지역	100%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50~100%	보전녹지지역	50~80%	
용도지역 구분	용적률의 최대한도	지역의 세분	용적률의 세분	비고																																																		
상업 지역	1,500%	중심상업지역	200~1,500%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	200~1,300%																																																			
공업 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200~1,100%																																																			
		근린상업지역	200~900%																																																			
도시 지역	500%	준공업지역	150~400%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																																																		
		일반 주거 지역	일반공업지역		150~350%																																																	
			전용공업지역		150~300%																																																	
			전용 주거 지역	200~500%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100~200%	제1종, 2종으로 구분																																																	
			제2종	100~250%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100~300%	제1종, 2종으로 구분																																																			
	제2종	50~100%																																																				
녹지 지역	100%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50~100%																																																			
		보전녹지지역	50~80%																																																			

[과년도 출제문제]

페이지	항 목	오	정																								
244	2019년 1회 7번 보기 및 해설 수정	<p>① 직류 400[V] 이하, 교류 400[V] 이하 ② 직류 400[V] 이하, 교류 600[V] 이하 ③ 직류 600[V] 이하, 교류 600[V] 이하 ④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p> <p>해설 전압 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류</th> <th>직류</th> </tr> </thead> <tbody> <tr> <td>저압</td> <td>600V 이하</td> <td>750V 이하</td> </tr> <tr> <td>고압</td> <td>600~7,000V</td> <td>750~7,000V</td> </tr> <tr> <td>특고압</td> <td>7,000V 초과</td> <td>7,000V 초과</td> </tr> </tbody> </table>	구분	교류	직류	저압	600V 이하	750V 이하	고압	600~7,000V	750~7,000V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p>① 직류 400[V] 이하, 교류 400[V] 이하 ② 직류 400[V] 이하, 교류 600[V] 이하 ③ 직류 10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④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p> <p>해설 전압 구분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20.12.3 개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류</th> <th>직류</th> </tr> </thead> <tbody> <tr> <td>저압</td> <td>1,000V 이하</td> <td>1,500V 이하</td> </tr> <tr> <td>고압</td> <td>1,000~7,000V</td> <td>1,500~7,000V</td> </tr> <tr> <td>특고압</td> <td>7,000V 초과</td> <td>7,000V 초과</td> </tr> </tbody> </table>	구분	교류	직류	저압	1,000V 이하	1,500V 이하	고압	1,000~7,000V	1,500~7,000V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구분	교류	직류																									
저압	600V 이하	750V 이하																									
고압	600~7,000V	750~7,000V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구분	교류	직류																									
저압	1,000V 이하	1,500V 이하																									
고압	1,000~7,000V	1,500~7,000V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페이지	항 목	오	정
275	2019년 2회 97번 문제 수정	97.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로 올 지 않은 것은?(단, 일반형으로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97.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로 옳은 것은?(단, 일반형으로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021) 건축산업기사 4주완성 1차 정오표[2021.1.25]

[과년도 출제문제]

페이지	항 목	오	정															
47	2016년 2회 94번 문제 보기 수정	①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②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③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④ 너비 2.5 이상, 길이 5.0m 이상	①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②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③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④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2016년 2회 97번 문제 해설 수정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계산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의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해야 한다. ㉠ 6층 이상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계산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의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해야 한다.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 인 건축물 ㉥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147	2017년 3회 88번 문제 보기 수정	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② 다세대주택의 세대 내 칸막이벽을 해체하는 것 ③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 ④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② 다세대주택의 세대 내 칸막이벽을 해체하는 것 ③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 ④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48	2017년 3회 88번 문제 해설 수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건축물의 부분(주요구조부)</th> <th style="width: 50%;">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내력벽</td> <td>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변경</td> </tr> <tr> <td>기둥, 보, 지붕틀</td> <td>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td> </tr> <tr> <td>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td> <td rowspan="2">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td> </tr> <tr> <td>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td> </tr> <tr> <td>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삭제)</td> <td>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삭제)</td> </tr> <tr> <td>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td> <td>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td> </tr> <tr> <td>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 6층 이상 건축물 - 높이 22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건축물 중 2000m² 이상 다중이용업·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td> <td>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 변경</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부분(주요구조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 ² 이상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삭제)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삭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 6층 이상 건축물 - 높이 22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건축물 중 2000m ² 이상 다중이용업·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² 이상 수선, 변경	
건축물의 부분(주요구조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 ² 이상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삭제)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삭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 6층 이상 건축물 - 높이 22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건축물 중 2000m ² 이상 다중이용업·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² 이상 수선, 변경																	